

정 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법적지위)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 KOREA SCOUT ASSOCIATION이라 칭한다. (개정 01. 12. 29.)

② 본 연맹은 1969년 7월 28일 법률 제2118호로 공포된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부칙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스카우트 주관단체이다. (개정 01. 12. 29.)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연맹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호에 둔다. (개정 12. 2. 26.)

② 본 연맹은 필요한 지역에 지방·특수연맹을 둘 수 있다. (개정 10. 2. 22.)

제3조 (목적) 본 연맹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스카우트 방법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게 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세계스카우트 활동을 통하여 국제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기여함에 있다. (개정 21. 2. 22.)

제4조 (사업) ①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 스카우트 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관한 사업 (개정 01. 12. 29.)
2. 세계스카우트 활동에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개정 84. 3. 30.)
3. 대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개정 84. 3. 30.)
4. 지도자 양성 사업 (신설 84. 3. 30.)
5.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연구 개발 사업 (신설 84. 3. 30.)
6.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84. 3. 30.)
7.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신설 84. 3. 30.)
8.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
9. 회관, 훈련원, 수련시설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 (개정 10. 2. 22.)
10. 국제행사 추진에 관한 사업 (개정 10. 2. 22.)
11. 국내 및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지원 협력에 관한 사업 (신설 90. 3. 27.)
1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위탁교육 및 사업 (신설 95. 7. 8.)
13.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한 장학사업 (신설 96. 5. 29.)
14.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사업 (신설 04. 4. 27.)

1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가 주관 및 주최하는 일반여행사업
2. 청소년교류를 목적으로 청소년단체가 주관 및 주최하는 내외국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일반여행사업 (개정 12. 2. 26.)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신설 12. 2. 26.)
4.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신설 16. 2. 25.)
5.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공동협약에 의한 사업 (신설 16. 2. 25.)
6. 그 밖에 법인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16. 2. 25.)

제5조 (헌장 제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카우트 운동의 기본원칙과 방침, 각종 단위조직의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한 한국 스카우트연맹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개정 01. 12. 29.)

제5조2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연맹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개정 03. 4. 16.)

② 본 연맹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7. 2. 22.)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본 연맹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도자 및 본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4. 4. 24.)

1. 정회원 : 평생회원을 포함하여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본 연맹에 가입 등록된 지도자. (개정 24. 4. 24.)
2. 삭제 (개정 24. 4. 24.)
3. 명예회원 : 본 연맹 육성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및 단체 (개정 96. 5. 29.)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 연맹의 회원은 헌장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연맹의 회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및 복권) 본 연맹의 회원으로서 본 연맹의 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중앙명예회의

와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재가 제명 및 복권할 수 있다. (개정 14. 2. 27.)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연맹의 임원으로 다음의 이사 및 감사를 둔다.

1. 총재(대표이사) 1명
 2. 부총재 약간명 (개정 98. 4. 20.)
 3. 직선이사(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와 동수), 중앙치프커미셔너(중앙훈육위원장), 국제 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 중앙훈련위원장(훈련커미셔너) 및 사무총장(다만, 의결권은 없다)을 포함하며, 사무총장은 그 재임 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 3. 14.)
 4. 각 지방·특수연맹을 대표하는 중앙이사 각 1명 (개정 10. 2. 22.)
(이하 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라 한다) (개정 10. 2. 22.)
 5. 감 사 2명
- ② 이사는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인원수를 합산한 인원수로 한다. (개정 89. 3. 24.)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승인) ① 부총재, 직선이사 및 감사는 전국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1. 2. 22.)

- ② 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는 지방·특수연맹장으로서 전국총회에서 보고하여 선출한다. 다만, 연맹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총회에서 추천된 인사로 전국총회에 보고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개정 14. 2. 27.)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개정 84. 3. 30.)
- ④ 중앙치프커미셔너(중앙훈육위원장), 국제 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장), 중앙훈련위원장(훈련커미셔너)은 커미셔너(훈육위원) 자격 소지자로서 전국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훈련위원장(훈련커미셔너)은 훈련교수 자격 소지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 3. 14.)
- ⑤ (삭제 04. 4. 27.)
- ⑥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개정 95. 5. 29.)
- ⑦ 지방·특수연맹의 임원은 제10조의 임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단, 제1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4. 4. 24.)
- ⑧ 제11조 1항 및 4항의 임원은 전국총회에서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에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에 의한다. (신설 24. 1. 16.)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본 연맹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그 2

분의 1씩 교체, 선임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9. 3. 31.)

다만, 정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동일 직책에서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02. 5. 22.)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09. 3. 31.)

제13조 (임기의 계산) 본 연맹 임원의 임기는 그 선임이 결정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정기 전국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14조 (총재의 선출 및 임기) 총재는 전국총회에서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선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에 의한다. (개정 24. 1. 16.)

제15조 (보 선) ① 본 연맹의 임원 중 그 임기 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한다. (개정 04. 4. 27.)

1. 총재, 부총재의 결원은 전국총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98. 4. 20.)

2. 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의 결원은 당해 지방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중앙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1. 2. 22.)

3. 전 각호 이외의 임원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전국총회에 보고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본 연맹의 임원으로서 본 연맹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또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일단 그 직권을 정지시키고 다음 전국총회에 그 해임 동의를 요청한다.

② (삭제 10. 2. 22.)

제17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본 연맹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재는 이 법인을 대표하며 본 정관 및 헌장의 모든 사업을 통할하고 전국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95. 7. 8.)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총재 및 부총재 모두 유고시에는 중앙치프커미셔너(중앙훈육위위장)가 총재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4. 4. 24.)

③ 이사는 본 연맹의 유지, 발전 및 운영의 책임을 지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는 당해 지방·특수연맹의 발전 및 이사회와의 유대를 기한다. (개정 10. 2. 22.)

30.)

제21조 (지방·특수연맹) ①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다음의 지방연맹을 두며 인구 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연맹을 분할, 통합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0. 2. 22.)

1.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정 20. 3. 14.)
2.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정 16. 2. 25.)
3. 한국스카우트 부산연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정 16. 2. 25.)
4. 한국스카우트 대구연맹
대구광역시 북구 (개정 23. 2. 22.)
5. 한국스카우트 인천연맹
인천광역시 중구 (개정 16. 2. 25.)
6.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광주광역시 서구 (개정 16. 2. 25.)
7. 한국스카우트 대전연맹
대전광역시 중구 (개정 16. 2. 25.)
8. 한국스카우트 울산연맹
울산광역시 남구 (개정 20. 3. 14.)
9.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경기도 수원시 (개정 16. 2. 25.)
10.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경기도 고양시 (개정 16. 2. 25.)
11. 한국스카우트 강원연맹
강원도 춘천시 (개정 16. 2. 25.)
12.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충청북도 청주시 (개정 16. 2. 25.)
13. 한국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
충청남도 홍성군 (개정 17. 2. 10.)
14.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전라북도 전주시 (개정 16. 2. 25.)
15.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전라남도 무안군 (개정 16. 2. 25.)
16.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
대구광역시 북구 (개정 16. 2. 25.)

17. 한국스카우트 경남연맹

경상남도 창원시 (개정 16. 2. 25.)

18.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개정 14. 2. 25.)

② 해외, 해양, 항공, 환경, 우주, 종교 등 특수한 지역과 활동 분야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수연맹을 둘 수 있다. (개정 10. 2. 22.)

19. 한국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정 22. 2. 22.)

20.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

전라북도 익산시 (개정 20. 3. 14.)

21.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정 16. 2. 25.)

22. 한국스카우트 기독교연맹

인천광역시 남동구(신설 22. 2. 22.)

제22조 (지구연합회) 시, 군, 구 단위로 지구연합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수연합회를 둘 수 있다. (개정 84. 3. 30.)

제23조 (단과 대) 대원에게 훈육을 실시하는 조직단위로 단 또는 대를 육성단체 책임 하에 둔다. (개정 84. 3. 30.)

제5장 전국총회

제24조 (전국총회의 소집) ① 본 연맹의 정기 전국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전국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총재가 임시 소집하여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4. 4. 24.)

② 총재는 개최 7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89. 3. 24.)

제24조 1(서면·화상회의 등)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서면회의, 화상회의, 온라인회의 등 원격통신 수단을 통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 또는 보고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재적이사 중 과반수 이사가 대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때 또는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1.2.22.)

1.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1.2.22.)

2. 재난, 재해 또는 기타 대면회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1.2.22.)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서면결의, 전자투표 등 회의형태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1.2.22.)

제25조(대의원) 본 연맹 전국총회는 정회원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방·특수연맹을 대표하는 대의원 (개정 10. 2. 22.)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대의원

- 가. 각 지방·특수연맹마다 2명씩 (개정 10. 2. 22.)

- 나. 전년도말 육성단체수 매 200개, 또는 전년도 등록실적 10,000명 초과 시마다 1명씩을 계산하여 그 중 많은 수. 다만,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인을 대표하는 대의원

본 연맹 이사 및 감사 전원

3. 중앙본부를 대표하는 대의원

전호 이외의 중앙본부 임원 전원과 로버스카우트 중앙협의회 회장 (개정 10. 2. 22.)

- ② 대원을 대표하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10. 2. 22.)

제26조 (의안) 본 연맹 전국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 확정된 안건만으로 한다.

제27조 (전국총회의 기능) 본 연맹 정기 전국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또는 보고받는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개정 10. 2. 22.)
2. 법인의 해산 (개정 10. 2. 22.)
3. 정관 및 헌장 변경 (개정 10. 2. 22.)
4. 명예임원의 추대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의 보고
6.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
7.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8. 임원의 보선 및 선출된 임원의 보고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보고
10. 기타 중요 사항 (개정 95. 7. 8.)

제28조 (전국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국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전국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전국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전국총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전국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0. 2. 22.)

③ 제2항에 의한 전국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서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0. 2. 22.)

제29조 (전국총회의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본 연맹의 정기 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총재가 수시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4. 4. 24.)

② 총재는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89. 3. 24.)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 및 중앙본부의 목적달성을 위한 시책, 지도훈련, 기타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 실행하고, 본 연맹의 유지발전 및 운영과 업무집행의 책임을 지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 차입금,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7. 고문, 원로스카우트 추대

8. 중앙명예회의의 위원, 커미셔너(훈육위원), 부국제 커미셔너(국제훈육위원)의 선임, 부훈련 커미셔너(훈련훈육위원)의 선임 (개정 20. 3. 14.)
9.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원의 선임
10. 전국훈육지도자회의 제안사항
11. 제복, 장구, 수품에 관한 사항
12.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16. 2. 25.)
13. 지방·특수연맹 분할, 통합 또는 설립에 관한 사항 (개정 10. 2. 22.)
14. 기타 중요사항 (개정 95. 7. 8.)

제32조 (서면·화상회의) (서면·화상회의 등)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회의, 화상회의, 온라인회의 등 원격통신 수단을 통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 또는 보고받을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대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때 또는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1. 2. 22.)

1.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1. 2. 22.)
 2.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1. 2. 22.)
 3. 재난, 재해 또는 기타 대면회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1. 2. 22.)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서면결의, 전자투표 등 회의형태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1. 2. 22.)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10. 2. 22.)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0. 2. 22.)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서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0. 2. 22.)

제34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결정한 정례적인 사항 또는 경미하거나 특히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전원 9명으로 구성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이를 소집한다. (개정 24. 4. 24.)

제7장 지원단체

제35조 (지원단체) 본 연맹의 유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운동을 이해 및 지지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 지원단체를 둘 수 있다. (개정 10. 2. 22.)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자산 및 재산처분의 절차) ① 본 연맹의 자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개정 95. 7. 8.)

② 본 연맹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별지 목록의 부동산
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

③ 보통재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95. 7. 8.)

1. 임원 기여금 (개정 10. 2. 22.)
2. 등록비 및 회비 수입 (개정 10. 2. 22.)
3.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4.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5. 독지가 및 후원기관의 찬조금
6. 대원 및 대원 가족의 지원금 (신설 96. 5. 29.)
7. 지원단체의 보조금
8. 정부보조금
9. 기타 수입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03. 4. 16.)

⑤ (삭제 95. 7. 8.)

제37조 (예산 및 결산) 이사회는 본 연맹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심의 책정하고 사업보고 및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전국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10. 2. 22.)

제38조 (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 (위 임) 본 연맹 전국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 중 그 회의의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 및 임원은 개회 전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4. 4. 24.)

제40조 (회의록) ① 본 연맹의 전국총회 및 이사회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사무총국에 보존한다. (개정 84. 3. 30.)

제41조 (해 산) ① 본 연맹은 이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 전국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10. 2. 22.)

② 제1항에 따라 본 연맹이 해산할 경우 본 연맹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본 연맹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개정 21. 2. 22.)

제42조 (정관의 개폐) 본 정관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국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0. 2. 22.)

제43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전국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폐할 때 또한 같다.

제44조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개정 10. 2. 22.)

제45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연맹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부표와 같다.

제46조(기부금 및 기여금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1. 2. 22.)

부 칙

1. (경과조치) 이 정관 제12조에 의한 임기의 적용은 1976년도 전국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으로부터 적용한다.

2. (효 력) 본 개정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1976년도 전국총회에서 소급 추인한다.

3. 제정 및 개정 년월일

1954년	5월	1일	제정	
1968년	4월	13일	1차	개정
1971년	3월	20일	2차	”
1972년	2월	25일	3차	”
1975년	12월	26일	4차	”
1978년	11월	27일	5차	”
1982년	5월	25일	6차	”
1984년	3월	30일	7차	”
1985년	4월	16일	8차	”
1986년	3월	14일	9차	”
1987년	3월	24일	10차	”
1989년	3월	24일	11차	”
1990년	3월	27일	12차	”
1991년	3월	22일	13차	”
1991년	12월	6일	14차	”
1993년	3월	30일	15차	”
2009년	3월	31일	16차	”
2010년	2월	22일	17차	”
2011년	2월	26일	18차	”
2012년	2월	26일	19차	”
2013년	2월	24일	20차	”
2014년	2월	27일	21차	”
2016년	2월	25일	22차	”
2017년	2월	23일	23차	”
2020년	3월	14일	24차	”
2021년	2월	22일	25차	”
2022년	2월	22일	26차	”
2023년	2월	22일	27차	”
2024년	1월	16일	28차	”

부칙(1995. 7. 8.)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1996. 5. 29.)

(정 관)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1998. 4. 20.)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0. 5. 17.)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1. 6. 20.)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1. 12. 29.)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2. 5. 22.)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3. 4. 16.)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4. 4. 27.)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5. 3. 24.)

이 개정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6. 3. 29.)

이 개정 정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7. 2. 22.)

이 개정 정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8. 3. 6.)

이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09. 3. 31.)

이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정 관)

부칙(2010. 2. 22.)

이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1. 2. 26.)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2. 2. 26.)

1.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지방·특수연맹 대표 중앙이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4.)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4. 2. 27.)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6. 2. 25.)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17. 2. 23.)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20. 3. 14.)

이 개정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2021. 2. 22.)

1. (경과조치) 이 정관 제11조 4항의 중앙훈련원장(훈련커미셔너) 선출에 관한 사항은 2022년 전국총회부터 적용한다. 2022년 전국총회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2.)

1. (경과조치) 2022년 정기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임원(부총재, 직선이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 관)

부칙(2023. 2. 22.)

1.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6.)

1.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24.)

1.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총괄표

구분 재산명	수 량	단 위	평가금액	비 고
대 지	25,314.65	m ²	2,610,868,406	
건 물	18,925.8	m ²	16,469,985,370	
답(□)				
전(□)				
잡종지	19,731	m ²	40,266,360	
임 야	209,637	m ²	516,403,946	
동산(현금)			3,709,549,890	
주 식				
기업체				
기계기구 (□□□□)				
합 계	273,608.45	m ²	23,347,073,972	

1. 대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출연(취득) 금액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취득 년월일	취득당시 평가액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대 (□)	1,165	69. 4.20	18,614,330	한국스카 우트연맹	중앙회관
2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원당동	200-5	"	8,650	66. 9.30	7,520,712	"	중앙훈련원
3	"	201-2	"	12,353.67	"	10,741,011	"	"
4	인천광역시 중 구 중앙동 2가	11	대	214.9	21.12.10	건물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인천연맹
5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20-5	"	320.3	23. 3.31.	건물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대전연맹
6	경남 창원시 성 산구 중앙대로	37	"	24.24	91. 2.19	건물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경남연맹
7	광주광역시 서 구 쌍촌동	1271-4	"	390.4	07.6.22	600,000,000	"	광주연맹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 동	504-4	"	224.9	05.4.11	145,700,000	"	제주연맹
9	전남 무안군 삼 향면 남악리	1966	"	781.4	08. 9. 3.	703,260,000	"	전남연맹
10	전남 무안군 삼 향면 남악리	1967	"	763.4	08. 9. 3.	735,154,200	"	전남연맹
11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	85-52	"	340.6	08.10.22.	214,198,153	"	충북연맹
12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우동 선프라자 8층 825호	1434	"	21.808	16.01.29	건물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부산연맹
13	충청남도 홍성 군 홍북면 신경 리	587-1	"	64.03	16.10.21.	175,680,000	"	충남·세종 연맹
계				25,314.65		2,610,868,406		

(정 관)

2.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지적 (㎡)	출연(취득) 금액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취득 년월일	취득당시 평가액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4	철근, 철골 콘크 리트 지하 4층, 지상 10층	9,952.04	98. 4.14.	9,691,080,350	한국스카 우트연맹	중앙회관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 삼릉길 107-62	철근콘크리트 스레트 지상 3 층	2,242.31	69. 9.22	1,333,690,372	"	중앙 훈련원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 삼릉길 107-62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식 지상 2층	93.45	"	307,199,536	"	"
4	인천광역시 중구 신 포로23번길 62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붕)3층	377.89	21.12.10	878,783,745	"	인천연맹
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30	철근콘크리트 지 하1층, 지상4층	893.8	23. 3. 31.	900,000,000	"	대전연맹
6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철근 슬라브식 지상 4층	619.55	88.10.29	50,000,000	"	경북연맹
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7(경남오피스 텔 1008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식	104.4	91. 2.19	110,220,000	"	경남연맹
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 태리 88-4	흙벽돌조스래트 단층주택	117	90. 5. 7	6,435,000	"	파주야영장 건물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난산온평로 537	경량철골조	581.36	96.12.17	217,905,510	"	중앙본부 금석 야영장
1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 주로 86	철근콘크리트 지상6층	1,131.44	07. 9.11	800,000,000	"	광주연맹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평전3길 34-1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식 지하 1층 지상3층	397.14	05. 4.11	310,000,000	"	제주연맹
1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14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상4층	1,521.20	08. 9. 3.	1,152,800,000	"	전남연맹
1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97번길 28	철근콘크리트 지 하1층, 지상4층	648.44	09. 6. 1.	272,518,857	"	충북연맹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 린시티3로 1, 825호(우동, 선프라자)	철근콘크리트	100.91	16.01.29	230,000,000	"	부산연맹
1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150번길 10	철근콘크리트	153.87	16.10.21.	209,352,000	"	충남·세종 연맹
계			18,925.8		16,469,985,370		

3. 전(□) (삭제 21. 2. 22.)

4. 잡종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출연(취득) 금액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취득 년월일	취득당시 평가액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9	잡종지	9,930	68. 8.30	8,689,360	한국스카 우트연맹	중앙 훈련원
2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71-15	"	9,730	82.10.31	31,577,000	"	송광 훈련장
3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1-5	"	71	09.12.29		"	송광 훈련장
	계			19,731㎡		₩40,266,360		

(정 관)

5. 임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출연(취득) 금액		등기부상 소유자	비고
					취득 년월일	취득당시 평가액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산 154-1	임야	165,295	89. 4. 29.	425,000,000	한국스카 우트연맹	서울북부연맹 서울남부연맹
2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영태리	산 88-4	"	3,074	94. 4. 7.	12,695,620	"	경기남부연맹경 기북부연맹
		산 88-7	"	198	"	859,320	"	경기남부연맹 경기북부연맹
3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성산읍 난산 리	2513	"	29,990	94. 4. 20.	19,703,430	"	중앙본부 (금석야영장)
		2513-1	"	8,364	"	5,614,476	"	
4	전라북도 완주군 소 양면 대흥리	산12-3	"	2,334	07. 12. 18.	50,000,000	"	송광훈련장
5	전라북도 완주군 소 양면 죽절리	산23-1	"	382	09. 12. 29	2,531,100	"	송광훈련장
	계			209,637㎡		₩516,403,946		

6. 동산(현금)

종별	수량	출연(취득)금액		등기부상소유자	비고
		취득년월일	취득당시평가액		
현금(예치금)		89.11.7	169,549,890	한국스카우트연맹	
현금(예치금)		23.2.16.	540,000,000	한국스카우트연맹	울산, 경남
현금(예치금)		23. 3월 예정	3,000,000,000	한국스카우트연맹	대구
계			₩3,709,549,890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대표이사	조 동 식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231	
이 사	최 승 만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7	
이 사	이 헌 구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5-16	
이 사	이 태 환 (□ □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가 30	
이 사	최 선 익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66	